

(최신 판례)

5. 보증채무이행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1. 쟁점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2. 판시사항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해설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연히 성립하나, 예외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융통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면 책임재산의 회복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해행위의 법리는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